

강원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입법 · 정책 동향

- ◇ 제290회 임시회(4. 21. ~ 4. 29.) 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목록과 의원발의 조례안(9건) 주요내용을 소개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billgangwon16.council.or.kr:8080>

제290회 임시회 의안(조례안) 처리 목록

❖ 조례안 : 16건(도지사 7, 의원 9 * 제안자 구분)

위원회	의안(조례안)	대표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0. 4. 29.)
기획행정 위원회 (7)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	수정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김규호 의원	원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박인균 의원	수정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사회문화 위원회 (3)	강원도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허소영 의원	수정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영미 의원	원안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병석 의원	
농림수산 위원회 (2)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김정중 의원	원안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

위원회	의안(조례안)	대표발의자	본 회의 처리결과 (2020. 4. 29.)
경제건설 위원회 (3)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호 의원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도지사	
교육 위원회 (1)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이종주 의원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290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0. 5. 1.(월)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9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내용소개

▣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남상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원도 명예도지사는 강원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중에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장·군수 또는 실·국·원·소장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지사를 위촉

하도록 하던 것을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촉·해촉·취소·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 대표발의: 박인균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2)
- 공동발의: 안미모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5)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태백2)

강원도 일부 조례의 근로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상임위 심사에서 제명이 “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수정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이며, 각각의 조례 내용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근로 개념을 사용한 기존 조례들을 시대적 요청에 따라 노동 개념으로 일괄정비하여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노동자의 자주성이 존중받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인균 의원



안미모 의원



허소영 의원



김혁동 의원

▣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구)



강원도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도내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소음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고 무료 법률상담, 소음피해 예방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정부 및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5)

■ 공동발의: 윤지영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1)
정유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확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주요시책,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소영 의원



윤지영 의원



정유선 의원

▣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심영미 의원(사회문화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 공동발의: 반태연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3)
김수철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화천)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양)

강원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사업 계획과 추진방법,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감염병관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와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영미 의원



반태연 의원



김수철 의원



김정중 의원

▣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4)
- 공동발의: 심영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1)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정선1)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강원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의 예술인이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지역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고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의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병석 의원



심영섭 의원



장덕수 의원

▣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대표발의: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양)
- 공동발의: 곽도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5), 김상용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삼척1)
박효동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고성), 최재연 의원(농림수산위원회·미래통합당·철원1)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5)

강원도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강원도 자원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시·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운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도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중 의원 곽도영 의원 김상용 의원 박효동 의원 최재연 의원 허소영 의원

▣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7)
- 공동발의: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정선2)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인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모빌리티(E-mobility)란 전기차,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및 운송수단을 말하며 이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서비스 등의 관련 업종으로 구성된 산업을 이모빌리티 산업이라 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화단지 조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술인증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의 설립, 국내외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성호 의원 나일주 의원 조형연 의원

▣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이종주 의원(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춘천2)
- 공동발의: 박효동 의원(농림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성)



이종주 의원



박효동 의원

강원도교육감이 발의하는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교육청의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입법예고 예고 및 공포의 과정에 필요한 절차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된다.